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(제32조의2제3항 관련)

1. 일반적 기준

- 가.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이하 "대행자"라 한다)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
- 1)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
 - 2)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
 - 3)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·법인으로 등록된 기관·단체
- 나.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.
- 다.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.
- 라.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,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,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.
- 마.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.

2.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

- 가.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라목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마목의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.
- 나.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.
- 다.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.
- 라. 필수인력 확보기준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2명 이상	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	

(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3명 이상)	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2)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)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)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)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)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	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
	3)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나) 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구조공학

비고: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해야 한다. 다만,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.

마.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

1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산림기술사, 지질 및 지반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농업토목공학, 산림공학, 지질 및 지반공학, 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	토목공학

	이상 (1)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(2)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(3)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(4)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	
	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나) 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도시계획학, 도시공학, 토목공학

2)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 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산림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건설안전공학, 농업토목공학, 산림공학, 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 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

3)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도시계획학, 도시공학, 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 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1)나) 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	도시계획학, 도시공학, 토목공

	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학
--	----------------	---

4)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 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수 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 목구조공학, 도 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건 설 안 전 공 학, 농 업 토 목 공 학, 수 자원공학, 토 질 및 기초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도시계획학, 도 시공학, 토목공 학

5)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기술사, 농어업토 목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, 토질 및 기초기술 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또는 지적기술 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도 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농 업 토 목 공 학, 수 자원공학, 토 질 및 기초공학, 측량 및 지형공 간 정보공학, 지 적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기사, 지적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측량 및 지형공 간 정보공학, 지 적학

6) 재해복구사업의 분석·평가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시공학, 토

	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 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산림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건설안전공학, 농업토목공학, 산림공학, 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

7) 비상대처계획 수립(풍수해 부문)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4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해안항만공학,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, 건설안전공학, 농업토목공학, 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
	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, 건설안전기사, 도시계획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, 건축공학,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, 도시계획학, 도시공학

8) 비상대처계획 수립(지진 부문)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4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항만 및 해안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철도기술사, 가스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	토목구조공학, 건축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해안항만공학, 전기공학, 철도공학, 가스

	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공학, 건설안전공학, 정보통신공학, 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토목기사, 전기기사, 가스기사, 정보통신기사, 건설안전기사, 건축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, 건축공학, 철도공학, 전기공학, 가스공학, 정보통신공학

9)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2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농업토목공학, 수자원공학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재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